#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0 발의연월일: 2024. 6. 11.

발 의 자:신영대·박희승·김정호

민형배 • 한병도 • 민병덕

임오경 • 한민수 • 전재수

윤준병·서삼석·정청래

홍기원 • 정준호 • 문금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① 구인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 1.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
- 2. 인공지능 채용의 알고리즘 작동방법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구인자는 구직자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을 할 수없다.
-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전문기관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3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공지능 채용의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개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8조의2(인공지능 채용) ① 구인
	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
	용하여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이라 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채용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고
	지방법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
	<u>다.</u>
	1. 인공지능 채용의 평가방식
	2. 인공지능 채용의 알고리즘
	<u>작동방법</u>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인자는 구직자가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
	정보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채용을 할 수 없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인
	공지능 채용에 활용되는 기술
	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주

 기적으로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전고지의
 시기, 제3항에 따른 기술 점검
 의뢰의 주기 등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